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1. 성인지 교육 편람 내용(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4Page)

3) 성인지 교육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교육대학원 등의 경우,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봄)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한다. 단,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대학별 성인지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내용, 방식, 기간, 이수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다만, '성인지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예시)

-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성인지 교육 콘텐츠 및 연구내용(교육안)을 참고, 활용 가능

㉤ 여성가족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을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③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④ 편입학, 재입학, 복학자에 대한 적용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2. 성인지 교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비고	제외대상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편입생의 경우 2회 이상	21. 2. 9.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전체 학번 이수 필요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3.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가.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순	내용	강의 구성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2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나.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① 성인지 교육(16380) 개별 수강신청(수강신청 기간 개설 예정)

* 2021-2학기는 개설시기가 늦은 관계로 이수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 예정

▼

②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통합교육 이수

* 이수 후 과제 제출 란에 이수증 제출

▼

③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강의 진도율 95퍼센트 이상 시 이수완료

▼

④ 성인지 교육 이수 완료

4. 성인지 교육 강좌 구성(안)

가. 학생용 4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통합교육

차시	제목	학습내용	시간
1차시	폭력예방교육의 목적	-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과 차별에 대한 인지의 필요성	6:11
2차시	재난이 보여준 우리 사회의 문제점	-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증가한 인권침해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으로 발생한 대학 내 차별 문제	17:25
3차시	일상 내 폭력구조 및 대학 내 폭력구조	-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 2020년 발생한 온라인 성 착취 사건 ‘n번방 사건’ -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 대학 내 발생하는 일상적 성폭력	27:03
4차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일상 속 흔하게 나타나는 외모평가 문제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 -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유형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	26:30
5차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 코로나 19 발생 후 증가한 가정폭력 - 가정폭력의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 - 가정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 -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 -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	33:34
6차시	성매매 예방교육	- 일상 속 만연한 성매매 문제 - 성매매의 잘못된 사회적 통념 -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29:49
7차시	대학의 역할	-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삶의 실현 방법	1:50
합 계			2:22:22

나.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차시	제목	학습내용	시간
1차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 성과 젠더 - 성역할과 성역할 고정관념 - 성차이와 성차별	13:49
2차시	성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와 체계	- 성폭력 관련법의 체계 - 형법상 주요 성폭력 관련 법률 -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성폭력 관련 법률 -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성폭력 관련 법률	24:09
3차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학생지도방법	-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 조사 연구 결과 등을 통해 보는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학생 지도하기	16:19
4차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사의 역할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사의 대처 및 태도	25:54
합 계			1:20:11